

2016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7. 3. 3 (金)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승 주 (인)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6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6
나. 지배구조 현황	8
다. 관련 규정	9
2. 이사회	10
가. 역할(권한과 책임)	10
나. 구성(이사)	15
다. 활동내역	20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2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9
가. 역할(권한과 책임)	29
나. 구성	29
다. 선임기준	29
라. 활동내역과 평가	30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1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42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42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54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54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55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58
바. 사외이사 평가	59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60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60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2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63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4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4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4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65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5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65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5
6. 감사위원회	66
가. 역할(권한과 책무)	66
나. 구성	6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69
라. 감사보조조직 등	71
7. 리스크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74
가. 역할(권한과 책무)	74
나. 구성	7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6
8. 내부거래위원회	79
가. 역할(권한과 책무)	79
나. 구성	8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0

9. 경영위원회	83
가. 역할(권한과 책무)	83
나. 구성	8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4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86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86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보수위원회)	87
가. 총괄	87
나. 구성	87
다. 권한과 책임	88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91
2. 보수체계	93
가. 주요사항	93
나. 보수 세부사항	96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97

[첨부]

1. 정관	101
2. 이사회 규정	124
3.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130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33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136
6. 감사위원회 규정	140
7. 위험관리 규정	148
8. 경영위원회 규정	173
9. 지배구조내부규범	176
10. 윤리강령	196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한화투자증권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6년말 현재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6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경영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세무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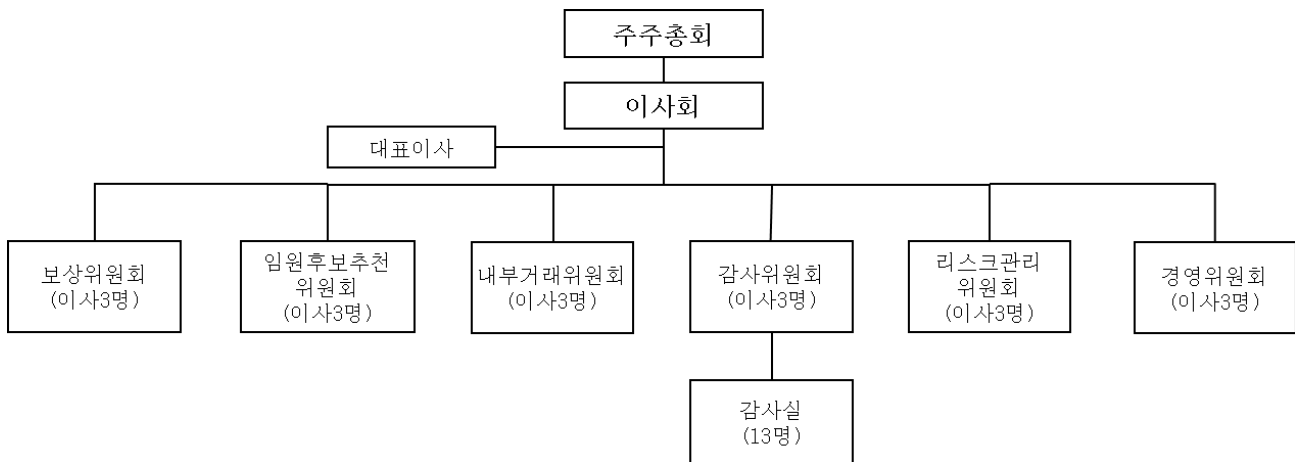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dis.kofia.or.kr>

한화투자증권은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16.12월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6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는 2/3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수립, 위험한도 관리 등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상임/사외)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	4 / 7	여승주(상임)	정관 이사회 규정
보상위원회*	성과보상체계의 적절성 심의·의결	2 / 3	한종석(상임)	보수(보상) 위원회 규정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임원후보 대상자 관리 및 추천	2 / 3	김용재(사외)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내부거래 위원회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심의·의결	2 / 3	배준근(상임)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3 / 3	송규수(사외)	감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험 관리 · 감독	2 / 3	여승주(상임)	위험관리 규정
경영위원회	경영 일반사항 의결	0 / 3	여승주(상임)	경영위원회 규정

※ '16.10월 제12차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제56기(2017년) 정기주주총회일부터 보상위원회는 **보수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지배구조법 상의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과 통일)

다. 관련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첨부6.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7. 위험관리 규정
- 첨부8. 경영위원회 규정
- 첨부9.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10. 윤리강령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경영목표·전략은 '16.10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16.11월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 수립 및 최종안을 수립하고 '17.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17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17년 경영목표·전략 주요내용)

'17년에는 부동산·구조화 금융 경쟁력 강화 및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IB 수익 확대, 운용자산 다변화를 통한 Trading 수익 제고, WM 흑자구조 정착 및 고객/자산 기반 확대 추진, 리서치 서비스 복원을 통한 Wholesale 경쟁력 강화 등 사업부 수익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 자원 배분,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및 철저한 사업목표 관리를 통해 수익 및 ROE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2호, 이사회 규정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이에 따라 '16년 2월 개최된 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안(제4호 의안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건에 포함)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

변경 前	변경 後
제32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목적: 이사진 운용의 유연성 제고 및 임기관리의 효율성 향상 도모

'16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정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본 안건 승인 후 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사내 2명, 사외 4명)부터 그 임기가 반영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3호).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예산은 '17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17.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16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17.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17.2월 제1차

이사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17년 3월 3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56기 결산의 주요 내용)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요약>

<별도재무제표>

(단위: 억원)

구 분	제56기	제55기	증감
자 산	67,016	74,874	△7,858
부 채	58,764	66,928	△8,164
자 본	8,252	7,946	306
영업이익	-1,929	-118	△1,811
당기순이익	-1,657	-89	△1,568

<연결재무제표>

(단위: 억원)

구 분	제56기	제55기	증감
자 산	69,357	76,623	△7,266
부 채	61,206	68,797	△7,591
자 본	8,151	7,826	325
영업이익	-1,929	-110	△1,819
당기순이익	-1,608	-123	△1,48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4호, 이사회 규정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바목). '16년에는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없어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4조).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과 준법감시인의 임면 시에 심의·의결을 합니다(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14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16.12월 제15차 이사회에서 '201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내용(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내부통제기준 제7조).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준칙을 반영하여 개정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기준 제12조).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사회가 위험관리조직의 최상위 기구로서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를 두어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4월 제5차 이사회에서 '15년도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정책의 수립·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16.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포함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운영·평가 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회 이사회에서 경영승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16.12월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의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구성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용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향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한화투자증권은 이해상충행위를 관리하고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상법 제398조, 이사회 규정 제8조). '16년도에는 4월, 8월, 9월, 12월 각각 개최된 제5차, 제10차, 제11차, 제15차 이사회에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두어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2조). '16년도에는 3월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4월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한화인재경영원 위탁 교육 계약', 5월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유형자산(부동산)매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 11월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재계약'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한화투자증권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정관 제29조). 최대원수를 12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그 이상일 경우 이사 간 의견 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6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월 이사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만료 되었는데, 이 중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연임 시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정관 제32조). 이는 이사진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법률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내규인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제8조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16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2명, 경영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세무분야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여승주 사내이사가 '16.2월 제2차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당시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에는 그 사유를 공시할 예정입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7조, 이사회 규정 제5조).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여승주 (現)

2015년 임시주주총회('15. 11. 5)에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3년(~'18. 11. 4)입니다. '16.2월 제2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승주 사내이사(대표이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부사장('12~'15년),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전무('11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이사회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16.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정규상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② 정규상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現)

제52기 정기주주총회('13. 6. 21)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됨으로써 그 임기는 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정규상 사외이사는 현재 제20대 성균관대학교 총장('15.1월~)으로 근무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13~'14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장('03~'07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16.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③ 송규수 사외이사 (現)

제52기 정기주주총회('13. 6. 21)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됨으로써 그 임기는 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송규수 사외이사는 대전시티즌 대표이사('08~'09년), 한화이글스 단장('04~'08년), 한화증권 HR센터장('03~'04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④ 이준행 사외이사 (現)

제52기 정기주주총회('13. 6. 21)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

서 연임됨으로써 그 임기는 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이준행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03년~)로 근무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08~'10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⑤ 배준근 사내이사 (現)

제55기 정기주주총회('16. 3. 18)에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배준근 사내이사는 한화투자증권 비상근고문('15~'16년), 한화투자증권 Retail사업본부 부분부장('13~'14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WM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며, 이사회내 위원회 중에서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⑥ 한종석 사내이사 (現)

제55기 정기주주총회('16. 3. 18)에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한종석 사내이사는 한화그룹 비서실 상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며, 이사회내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⑦ 김용재 사외이사 (現)

제55기 정기주주총회('16. 3. 18)에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김용재 사외이사는 현재 이현세무법인 회장('16.3월~)으로 근무 중이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08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09년)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⑧ 박재황 사내이사 ('16.3월 퇴임)

제52기 정기주주총회('13. 6. 21)에서 선임되었으며 약 3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6.3월 퇴임하셨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이사회내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⑨ 주진형 사내이사 ('16.3월 퇴임)

2013년 임시주주총회('13. 9. 12)에서 선임되었으며 약 3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고 '16.3월 퇴임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내 위원회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⑩ 정의용 사외이사 ('16.3월 퇴임)

제50기 정기주주총회('11. 6. 3)에서 최초 선임 후 약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6.3월 퇴임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선임사외이사 및 이사회내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3) 요약

성명	사내/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여승주	사내	대표이사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부사장 한화생명 경영기획 실장 전무	'15.11.5	'18.11.4	14개월	임추위 리스크관리 경영위
정규상	사외	사외이사	성균관대학교 총장(現)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장	'13.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개월	임추위 보상위 감사위
송규수	사외	사외이사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한화이글스단장	'13.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개월	리스크관리 보상위 감사위
이준행	사외	사외이사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교수(現)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13.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개월	리스크관리 내부거래 감사위
김용재	사외	사외이사	이현세무법인 회장(現) 충북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10개월	임추위 내부거래
배준근	사내	본부장	한화투자증권 비상근고문 한화투자증권 Retail사업부 부분부장 상무	'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10개월	내부거래 경영위
한중석	사내	본부장	한화그룹 비서실 상무/상무보	'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10개월	보상위 경영위
주진형 (퇴임)	사내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 전무 삼성증권 상무	'13.9.12	'16.3.18	31개월	사추위 리스크관리 경영위
박재황 (퇴임)	사내	본부장	삼성증권 전무	'13.6.21	'16.3.13	34개월	경영위 보상위 내부거래
정의용 (퇴임)	사외	사외이사	제17대국회의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11.6.3	'16.3.18	58개월	사추위 내부거래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6년에는 총 15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5.2%(정기이사회 96.4%, 임시이사회 94.8%)입니다. '15년도의 평균 참석율이 93.5%인 것에 비해 참석율이 보다 높아져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16년도 이사회는 총 35건의 의안을 가결하고 총 17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이사회: 2016. 2. 4 (08: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2. 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주진형	여승주	박재황	정의용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5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연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5년 성과급 재원 산정 및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15년 경영실적 보고

나) 제2차 이사회: 2016. 2. 29 (09: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2. 2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주진형	여승주	박재황	정의용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³⁾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퇴직예정 사내이사에 대한 퇴직금 가급(加給)	제한 ²⁾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

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관계로 의결권 제한

3) ①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②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③2015년 감사실적 및 결과, ④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⑤201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⑥제55기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제출, ⑦제1,2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⑧ELS현황 및 관리 방안

다) 제3차 이사회: 2016. 3. 18 (10: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3. 1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차 이사회: 2016. 3. 30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3. 2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1)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

마) 제5차 이사회: 2016. 4. 27 (16: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4. 22]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성과급 이연제도 변경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

2) ①내부회계관리자 변경, ②'15년~'16.3월 리스크관리 종합보고

바) 제6차 이사회: 2016. 5. 9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5. 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유형자산(부동산)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7차 이사회: 2016. 5. 30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5. 2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유가증권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8차 이사회: 2016. 6. 8 (16: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6. 3]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대표이사의 거래소 비상임이사 선임, ②2016년 1분기 경영실적

자) 제9차 이사회: 2016. 7. 20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7. 1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주의 발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10차 이사회: 2016. 8. 19 (10: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8. 1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특수주간신문 ‘본드 브리프’ 폐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2분기 경영실적

카) 제11차 이사회: 2016. 9. 27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9. 23]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

타) 제12차 이사회: 2016. 10. 10 (09: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0. 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사규 제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제13차 이사회: 2016. 10. 26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0. 2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14차 이사회: 2016. 11. 18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1. 1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종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예정 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공모발행관련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국내출장 관계로 불참

2) ①2016년 3분기 경영실적, ②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A) 제15차 이사회: 2016. 12. 21 (10: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2. 1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종석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 집행사원 등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고문위촉 및 처우에 관한 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내용 보고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본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역할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정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11회로 총 15차례 개최되었고, 모든 이사는 높은 참석률(95.2%)을 기록하며 회의 안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이사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안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공하여 각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한화투자증권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기준을 토대로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한화투자증권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舊 이사회 규정 제5조).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16.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정규상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정관 제37조). 이는 기존 사외이사 중 연장자로서 오랜 연륜이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배구조법 제13조를 반영하여 '16.10월 제12차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단, 개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시행), 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

가. 역할(권한과 책임)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탁월한 역량,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의식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갖춘 대표이사와 독립적이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적정한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합니다(동 위원회 규정 제4조).

나. 구성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용재	사외(비상임)	위원장	2016.12.21	제57기 정기주총일
여승주	사내(상임)	위원	2016.12.21	2018.11.4
정규상	사외(비상임)	위원	2016.12.21	제56기 정기주총일

다. 선임기준(자격요건과 추천 절차)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 선임을 위하여 후보군 선발, 후보 추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후보 자격요건 및 세부 절차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한화투자증권은 2016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의결안건 2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외이사인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의 재선임 추천과 정의용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 김용재의 신규선임 추천을 가결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신설('16.12월, 제15차 이사회)됨에 따라 2016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용재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2.29 오전 9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주진형	정의용	정규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1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정규상 재선임)	찬성	찬성	제한 ^{주1)}	가결
가-2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송규수 재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3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준행 재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4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김용재 신규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 본인 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12.21 오전 11시 30분>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용재	여승주	정규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2016년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된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련사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위원 후보

2016년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된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련사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후보자 성명 및 출생연도 등

구분	성명	출생연도	출신학교
1	정규상	1952년	서울고 성균관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碩) 성균관대 법학(博)
2	송규수	1954년	대전고 연세대 행정학 한남대 경영학(碩)
3	이준행	1960년	대건고 연세대 경제학 연세대 경제학(碩) 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博)
4	김용재	1950년	환일고 호원대 경영학

(2) 후보자 경력 사항

성명	경력구분	경력 상세 내용
정규상	일반경력	1998.03 ~ 2009.02 (前)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2009.03 ~ 현재 (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1 ~ 2014.12 (前)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2015.01 ~ 현재 (現)성균관대 총장
	사외이사경력	2013.06 ~ 현재 (現)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송규수	일반경력	1999.07 ~ 2003.01 (前)한화증권 강북영업본부장 2003.01 ~ 2003.04 (前)한화증권 HR 센터장 2003.05 ~ 2004.02 (前)한화이글스 부단장 2004.03 ~ 2007.12 (前)한화이글스 단장 2007.12 ~ 2009.06 (前)대전시티즌 대표이사
	사외이사경력	2013.06 ~ 현재 (現)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이준행	일반경력	1992.02 ~ 1997.08 (前)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997.09 ~ 2003.08 (前) 수원대학교 교수 2003.08 ~ 현재 (現)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08.01 ~ 2008.12 (前) 한국과생상품학회 회장
	사외이사경력	2008.03 ~ 2013.05 (前) HMC투자증권 사외이사 2013.06 ~ 현재 (現)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김용재	일반경력	2005.04 ~ 2005.10 (前) 평택세무서장 2005.10 ~ 2006.10 (前)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2006.10 ~ 2008.03 (前) 국세청 감찰담당관 2008.03 ~ 2009.01 (前)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2009.01 ~ 2009.06 (前)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2009.08 ~ 2016.02 (前) 이현세무법인 총괄부회장 2016.03 ~ 현재 (現) 이현세무법인 회장
	사외이사경력	2010.02 ~ 2015.03 (前) 세방(주) 사외이사 2010.06 ~ 2014.03 (前)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014.03 ~ 2016.03 (前) 롯데칠성음료(주) 사외이사 2016.03 ~ 현재 (現)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및 추천사유

성 명	제안자	추천사유	금융회사등과의 관계
정규상	경영진	법률전문가	없음
송규수	경영진	금융전문가	없음
이준행	외부기관	경제/재무전문가	없음
김용재	사외이사	세무전문가	없음

다) 금융회사등과 관계

구 분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는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후보자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는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 전문성

ㄱ. 후보자: 정규상

정규상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同대학원 석/박사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20대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약 30여년간 법조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며, 법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배양성에 힘쓰는 등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송규수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를 마치고,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하여 약 21여년간 기획, 인사, 지점 등에서 금융업에 특화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한화이글스 단장 및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증권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장 및 대표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쉽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이준행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同대학원 석사, Univ. of Pennsylvania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수원대학교 교수, 한국과생상품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약 26여년간 경제관련 자문 및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금융업 및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비전제시 등에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무 및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김용재 후보자는 약 40여년간 공직생활을 수행하며 평택세무서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약 50여년간 세무관련업에 종사하며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롯데칠성음료(주)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무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성

ㄱ. 후보자: 정규상

정규상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송규수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이준행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김용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었으며, 공직생활 및 타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경험 등 공정한 직무수행 경험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ㄱ. 후보자: 정규상

정규상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同 대학 총장으로 교내·외 평판이 우수합니다. 또한 현재 당사 사외이사로 이사회 의안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송규수 후보자는 한화이글스 단장,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존경받는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안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이준행 후보자는 한국과생상품학회장, HMC투자증권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안 등을 검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김용재 후보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롯데칠성음료(주)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회장으로 근무하며, 대외 평판이 우수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을 비추어 볼 때, 당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ㄱ. 후보자: 정규상

정규상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총장 재직 중으로 2015년 총 10회의 이사회 중 8회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사전 의안 검토 및 의견 개진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송규수 후보자는 현재 다른 회사의 상근/비상근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총 10회의 이사회 중 10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사전 의

안 검토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이준행 후보자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 총 10회의 이사회 중 9회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사전 의안 검토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김용재 후보자는 현재 이현세무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사전 의안 검토 및 의견 개진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정시간 이상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본인 소명

ㄱ. 후보자: 정규상

본인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사 외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본인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사 외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본인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사 외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본인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

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사 외에 롯데칠성음료(주)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재임하고 있으며, 임기종료예정일(당시)은 2016년 3월 26일 입니다. 이외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 2016년 1차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결과

ㄱ. 후보자: 정규상

정규상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2016년 2월 29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출석위원 2명(본인 제외)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ㄴ. 후보자: 송규수

송규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2016년 2월 29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출석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ㄷ. 후보자: 이준행

이준행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2016년 2월 29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출석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ㄹ. 후보자: 김용재

김용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2016년 2월 29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추천사유, 경력, 전문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출석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 중 3명이 재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률	평가 여부
정의용	2011.06~2016.03	임기만료	90%	—
정규상	2013.06~2016.03	연임	80%	—
송규수	2013.06~2016.03	연임	100%	—
이준행	2013.06~2016.03	연임	90%	—

* 이사회 출석률은 2015년 연간 기준임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따른 별도의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따른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후보군은 관계 법령과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의거하여 사전 준비 후 2017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한화투자증권은 독립적이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다양한 후보군 관리를 위해 주요주주, 임원,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예정이며, 2017년부터 매년 1회 이상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검증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3) 후보군 현황

한화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를 분야별로 추천 받아 자체 검증을 진행 후 분야별/추천경로별 후보군 현황 작성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련사항은 준비 중이며, 2017년부터 보고할 예정입니다.

차)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항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련사항은 준비 중이며, 2017년부터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2016. 2. 4 (08: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의용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5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연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5년 성과급 재원산정 및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15년 경영실적 보고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2016. 2. 29 (09: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의용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퇴직예정 사내이사에 대한 퇴직금 가급(加給)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②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③2015년 감사실적 및 결과, ④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⑤201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⑥제55기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제출, ⑦제1,2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⑧ELS현황 및 관리 방안

▪ 2016년도 제3차 이사회: 2016. 3. 18 (10: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4차 이사회: 2016. 3. 30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1)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

▪ 2016년도 제5차 이사회: 2016. 4. 27 (16: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성과급 이연제도 변경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임원보수규정 개정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내부통제기준 개정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

2) ①내부회계관리자 변경, ②'15년~'16.3월 리스크관리 종합보고

▪ 2016년도 제6차 이사회: 2016. 5. 9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유형자산(부동산)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7차 이사회: 2016. 5. 30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유가증권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8차 이사회: 2016. 6. 8 (16: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대표이사의 거래소 비상임이사 선임, ②2016년 1분기 경영실적

▪ 2016년도 제9차 이사회: 2016. 7. 20 (10: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주의 발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10차 이사회: 2016. 8. 19 (10: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특수주간신문 ‘본드브리프’ 폐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2분기 경영실적

▪ 2016년도 제11차 이사회: 2016. 9. 27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

▪ 2016년도 제12차 이사회: 2016. 10. 10 (09: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사규 제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13차 이사회: 2016. 10. 26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14차 이사회: 2016. 11. 18 (10: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예정한도 승인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공모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국내출장 관계로 불참

2) ①2016년 3분기 경영실적, ②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 2016년도 제15차 이사회: 2016. 12. 21 (10: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정규상	송규수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고문위촉 및 처우에 관한 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내용 보고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

▪ 201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 2. 29 (09:0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의용	정규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1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정규상 재선임)	찬성	제한 ^{주1)}	가결
가-2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송규수 재선임)	찬성	찬성	가결
가-3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준행 재선임)	찬성	찬성	가결
가-4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김용재 신규선임)	찬성	찬성	가결

주1) 본인 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2016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 12. 21 (11: 30 개최)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용재	정규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 2016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16. 2. 29 (09: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평가결과 의결				
다. 제55기 감사보고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5기내부감시장치 가동 현 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① 제55기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 ② 제55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보고,
③ 2015년 4분기 내부통제활동 보고, ④ 2015년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 2016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16. 3. 18 (11:0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16. 4. 8 (10:0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16. 6. 8 (17:0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²⁾				

- 1) ① 2016년 1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② 2016년 1분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③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2) 없음

▪ 2016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16. 8. 19 (9: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²⁾				

1) ① 외부감사인인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 결과 보고,
 ② 2016년 2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③ 2016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 없음

▪ 2016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2016. 11. 18 (09:0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¹⁾	
3. 보고안전 ²⁾ 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2017년 감사계획 의결	찬성	찬성	—	가결

1) 국내 출장 관계로 불참

2) ① 2016년 내부통제활동 및 2017년 계획 보고, ②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2. 29 (11: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자기자본비율 관련 한도 통합관리 시행(안)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4. 27 (17: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6년도 자체해지ELS 월별 발행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7. 20 (10: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년 하반기 전사 리스크한도 설정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2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 2016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10. 10 (10: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증자 후 전사 리스크한도 설정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3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마) 보상위원회

－ 2016 년도 개최내역 없음

바) 내부거래위원회

▪ 2016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3. 30 (08: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¹⁾	참석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일신 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2) ①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 2016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4. 27 (17:5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화인재경영원 위탁교육 계약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5. 9 (08: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유형자산(부동산) 매각	찬성	찬성	가결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가결

▪ 2016년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11. 18 (08:30 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재계약	찬성	찬성	가결

2)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정규상

(1) 활동내역

정규상 사외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2회에 참석(2번은 해외출장, 1번은 국내출장으로 불참)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 중 5회 참석(국내출장으로 1회 불참)과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정규상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5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송규수

(1) 활동내역

송규수 사외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송규수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이준행

(1) 활동내역

이준행 사외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4회에 참석(1번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모두, 내부거래위원회 4회 중 3회 참석(일신상의 사유로 1회 불참)하였습니다.

이준행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6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김용재

(1) 활동내역

김용재 사외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3회 모두 참석하였고, 내부거래위원회 4회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용재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49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			임추위 (사추위)			보상위			리스크관리			내부거래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실적
정규상	15	12	12	6	5	5	2	2	2	-	-	-							50
송규수	15	15	15	6	6	6	-	-	-	-	-	-	4	4	4				65
이준행	15	14	14	6	6	6	-	-	-	-	-	-	4	4	4	4	3	3	68
김용재	13	13	13				1	1	1	-	-	-				4	4	4	49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사	한화손해보험
보험료	211,309,000원
보험금	10,000,000,000원
계약조건	계약기간('16 年) 간 회사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 3 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함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16년에는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항이 없었으나, 향후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경영 전반이나 의결 사항과 관련한 정보(리서치 경제 전망,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정규상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평가
 - 정규상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정규상 사외이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장('03~'07년),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13~'14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20대 성균관대학교 총장('15.1월~)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규상 사외이사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 본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법률 전문가의 직무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2회에 참석(2번은 해외출장, 1번은 국내출장으로 불참)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 중 5회 참석(국내출장으로 1회 불참)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법률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2) 사외이사 송규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평가
 - 송규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송규수 사외이사는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기획팀, 인사팀, 다수의 지점 등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화이글스 단장('04~'08년), 대전시티즌 대표이사('08~'09년)를 역임했습니다.

증권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송규수 사외이사는 금융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직무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15회), 감사위원회(6회), 리스크관리위원회(4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현재 다른 회사의 상근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금융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3) 사외이사 이준행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평가
 - 이준행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준행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03년~)로 재직 중이며, 한국 파생상품학회 회장('08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양한 경제 관련 전·현직 수행 활동으로 사외이사로서의 필요한 경험과 재무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4회에 참석(1번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 중 6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모두, 내부거래위원회 4회 중 3회 참석(1번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경제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4) 사외이사 김용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평가
 - 김용재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용재 사외이사는 현재 이현세무법인 회장('16.3월~)으로 근무 중이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08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09년)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세무 및 회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용재 사외이사는 직무 전문성 요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제55기 정기주주총회('16.3.18)에서 최초 선임되어,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13회), 내부거래위원회(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세무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초 선임 시 2년 이내(2년 이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제한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역량의 자질 및 실적뿐만 아니라, 당사 이사회 운영 효율성, 지배구조 적정성,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등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위원회 참석률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이 충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의 위원회 겸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위원회 참여도(의안검토 및 의견 제시, 업무집행 감독 등), 활동 기여도(회사 발전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 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 능력 등에 대한 내부 평가방법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명	이사회/위원회 개최 횟수	참석 횟수	참석율
정규상	23	19	83%
송규수	25	25	100%
이준행	29	27	93%
김용재	18	18	100%

3) 외부평가

향후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한화투자증권은 '16.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정규상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정규상 선임사외이사는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및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 사외이사 업무지원 조직(기획관리팀)은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집행 시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정규상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만원	
	기본금	4,800만원	400만원×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440만원	교통비 등

2) 사외이사 송규수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만원	
	기본금	4,800만원	400만원×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520만원	교통비 등

3) 사외이사 이준행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만원	
	기본금	4,800만원	400만원×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480만원	교통비 등

4) 사외이사 김용재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373만원	
	기본금	3,373만원	173만원('16.03 일할지급) 400만원×8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440만원	교통비 등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종민	'08.05.30	'13.06.21	60 개월	보상위 ('12.2 월~'13.6 월) 리스크관리 ('13.4 월~'13.6 월)	-	한국관광공사 사장 문화관광부장관
강효석	'08.05.30	'13.04.01	58 개월	리스크관리 ('11.6 월~'13.4 월) 보상위 ('12.2 월~'13.4 월) 감사위 ('11.6 월~'13.4 월)	-	한국증권학회 회장
박종석	'08.05.30	'13.06.21	60 개월	감사위 ('08.5 월~'13.6 월) 내부거래 ('12.11 월~'13.6 월) 사추위 ('11.6 월~'13.6 월)	내부거래 위원장 ('12.11 월 ~'13.6 월)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아화재보험 부회장
정의용	'11.06.03	'16.03.18	58 개월	사추위 ('12.2 월~'16.3 월) 내부거래 ('12.11 월~'16.3 월)	내부거래 위원장 ('13.6 월 ~'16.3 월)	제17대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정규상	'13.0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 개월	사추위 ('13.6 월~) 보상위 ('13.6 월~) 감사위 ('14.3 월~)	선임 사외이사 ('16.3 월~)	성균관대학교 총장(現)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장
송규수	'13.0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 개월	리스크관리('13.6 월~) 보상위 ('13.6 월~) 감사위 ('13.6 월~)	감사위원장 ('13.6 월~)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한화이글스단장
이준행	'13.06.21	제56기 정기주총일	43 개월	리스크관리('13.6 월~) 내부거래 ('13.6 월~) 감사위 ('13.6 월~)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교수(現) 한국과생상품학회 회장
김용재	'16.03.18	제57기 정기주총일	10 개월	사추위 ('16.3 월~'16.12 월) 임추위 ('16.12 월~) 내부거래 ('16.3 월~)	임추위원장 ('16.12 월~)	이현세무법인 회장(現)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의 후보자 추천절차,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등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에 관한 사항 제4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의거,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예정 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비상상황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 의견 경과

- 해당사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소관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및 후보군 현황

당사는 2016년 중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후 진행을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관련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 따라 임원인사 담당부서에서 최고경영자승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입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내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감독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한화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6년 총 15회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제4항) 법률 및 정관에 위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감법 제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6.4월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6.4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 최초 기안 단계부터 일상감사를 통해 감독하였습니다.

‘16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최다수의 금융투자회사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전문부서 조직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문 용역을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IFRS 도입 및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재무제표화에 따라 한화투자증권 연결군의 감사인을 일치시켜 외부감사의 검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확인,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등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18조).

또한 회사가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실장이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4년 제3차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상근감사위원의 역할 및 권한 일부를 감사실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감사실장은 감사위원회 위임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매월 월간보고 및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라. 감사보조조직 등’ 항목 참고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제56기(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17.2월 제1차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 3월 3일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 및 제2차 이사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7조, 제18조).

감사위원회는 제1차, 제4차, 제5차, 제6차 (2016년 2월, 6월, 8월, 11월 개최)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모니터링, 교육 실시 등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6조, 상법 제415조의2, 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제19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정관 제42조).

2016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사외이사(비상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규수 사외이사(前 대전시티즌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인 정규상 사외이사(現 성균관대학교 총장)와 경제 및 재무 전문가 이준행 사외이사(現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 감사위원 3명은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송규수	사외(비상임)	위원장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이준행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정규상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3)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선임

한화투자증권은 지배구조법 제17조에 의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16.12월 제15차 이사회)하였으며, 향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해임할 권한 또한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감사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2016년에는 총 6회(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2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의 감사위원회 참석률은 95%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감사위원회: 2016. 2. 29 (09: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2. 2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평가결과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55기 감사보고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5기내부감시장치 가동 현 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의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① 제55기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 ② 제55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보고, ③ 2015년 4분기 내부통제활동 보고, ④ 2015년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나) 제2차 감사위원회: 2016. 3. 18 (11: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3. 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감사위원회: 2016. 4. 8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4. 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차 감사위원회: 2016. 6. 8 (17: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6. 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²⁾				

1) ① 2016년 1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② 2016년 1분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③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2) 없음

마) 제5차 감사위원회: 2016. 8. 19 (9: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8. 1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²⁾				

1) ① 외부감사인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 결과 보고,
② 2016년 2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③ 2016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 없음

바) 제6차 감사위원회: 2016. 11. 18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1. 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규수	이준행	정규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¹⁾	
3. 보고안전 ²⁾ 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2017년 감사계획 의결	찬성	찬성	-	가결

1) 국내 출장 관계로 불참

2) ① 2016년 내부통제활동 및 2017년 계획 보고, ②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감사실은 2016년 12월말 현재 총 13명(감사실장 1명, 감사직무 11명, 지원직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상근감사위원의 역할 및 권한을 일부 위임 받아 감사보조조직 운영을 주관하고, 감사실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6.01.08.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2.03.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2.29.	감사위원회	2015년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16.03.16.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4.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5.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6.08.	감사위원회	2015년 1분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2016.06.13.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7.07.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8.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08.19.	감사위원회	2015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16.09.09.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10.07.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6.11.15.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2016.11.18.	감사위원회	2016년 감사계획 의결 징계양정지침 개정 보고
2016.12.12.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 결과 및 계획 등)

※ 월간보고는 각 감사위원에게 E-Mail 발송 (서면 보고)

7. 리스크관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인의 상임이사(대표이사)와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며, 수립된 위험관리방침 및 전략은 위원회에 의하거나 또는 위원회 산하조직에 위임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가 부담가능한 전체 위험한도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 2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정 자산건전성 비율을 고려하여 부담가능한 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同 한도의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설정한 위험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16년 하반기 전사위험금액한도, 자기자본비율관리한도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의 위험관리집행위원회에서 개별 운용자산의 적정 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유상증자를 고려하여 전사위험금액한도, 자기 자본비율관리한도 등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이사회는 위임전결규정 및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관리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대응과 위원회 간 역할 정립, 영업부문 일선위험 관리 정상화 등 리스크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기존 위험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과 해임,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 한도 승인, 총비용 10억원 이상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의 선임 및 해임, 위기상황 대처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전사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토록 하고 있습니다(제5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예정, '16.10월 제12차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 지배구조법 제16조).

2016년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인의 상임이사와 2인의 사외이사(비상임)로 구성되어 위원회 소속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입니다.

여승주 상임이사(대표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前 한화증권 HR센터장으로 재직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송규수 사외이사와 경제

및 재무(리스크) 전문가 이준행 사외이사(現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여승주	사내(상임)	위원장	2016.2.29	2018.11.4
송규수	사외(비상임)	위 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이준행	사외(비상임)	위 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주진형 (퇴임)	사내(상임)	위원장	2013.9.12	2016.2.2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험관리규정 제8조).

2016년에는 총 4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율은 100%입니다. 4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결사항 5건, 보고사항 2건이었습니다. 의결사항은 전사 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4건,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1건이었으며, 보고사항은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2건이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2. 29 (11: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2. 2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기자본비율 관련 한도 통합관리 시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4. 27 (17: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4. 2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6년도 자체해지ELS 월별 발행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7. 20 (10: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7. 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년 하반기 전사 리스크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2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라)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10. 10 (10: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0. 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여승주	송규수	이준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증자 후 전사 리스크한 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 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2016년 3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항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 등과의 중요한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내부거래 보고 청취, 심의 또는 의결, 조사 및 명령, 보고 및 시정 조치 건의 등의 권한 및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내부거래 심의·의결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50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
2. 계열사와의 단일거래 대상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단독 계약 제외)에 의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등 거래
(단, 전산 관련 재계약 체결시는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내부거래 조사 요청

내부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내부거래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정의용 위원장과 박재황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이를 대신하여 배준근 사내이사, 김용재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이 중 배준근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배준근	사내(상임)	위원장	20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이준행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김용재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박재황 (퇴임)	사내(상임)	위원	2014.3.21	2016.3.13
정의용 (퇴임)	사외(비상임)	위원장	2013.6.21	2016.3.1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6년도에는 총 4회의 내부거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1.6%로 충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총 4건의 사전 심의 및 의결과 1건의 보고를 진행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3. 30 (08: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3. 2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배준근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¹⁾	참석	
3. 보고안전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1) 일신 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2) ①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나)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4. 27 (17:5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4. 2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배준근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한화인재경영원 위탁교육 계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5. 9 (08: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5. 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배준근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유형자산(부동산) 매각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2016. 11. 18 (08:3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1. 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배준근	이준행	김용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재계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내부거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항목에는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9.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전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자기자본 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진출
2. 인허가 업무
3. 복지기금의 출연
4.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5. 자기자본 5% 이하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6. 지점, 사무소 및 해외사업소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
7. 자기자본 5% 미만의 출자(기투자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단,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은 이사회 결의)
8.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나. 구성

1) 총괄

경영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위원회 규정 제4조).

2016년 말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와 2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주진형 위원장과 박재황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이를 대신하여 여승주 사내이사, 배준근 사내이사, 한중석 사내이사가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 중 대표이사인 여승주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여승주	사내(상임)	위원장	2016.2.29	2018.11.4
배준근	사내(상임)	위원	20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한중석	사내(상임)	위원	20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주진형 (퇴임)	사내(상임)	위원장	2013.9.12	2016.2.28
박재황 (퇴임)	사내(상임)	위원	2013.6.21	2016.3.1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5년도에는 총 3회의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 충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영업점의 통폐합과 관련된 총 3건의 의결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경영위원회: 2016. 1. 19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 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주진형	박재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점포 통폐합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차 경영위원회: 2016. 4. 20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4.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점포 통폐합 및 신설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경영위원회: 2016. 12. 26 (10:00 개최)

[안전통지일: 2016. 12. 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여승주	배준근	한중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점포 통폐합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항목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보수위원회)

가. 총괄

한화투자증권의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보상)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한화투자증권 정관 제40조를 그 근거로 하여 2012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3인(한종석, 송규수, 정규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인(송규수, 정규상)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종석 사내이사는 금융전반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수행하며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송규수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정규상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보상위원회는 보상관련 재무적 내용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시행 및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차기 주총 이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위원회의 재구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유무	약력
한종석	이사	사내이사	○	現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송규수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	—	前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정규상	이사	사외이사	—	現 성균관대 총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원장	2016.3.18	제57기 정기주총일
송규수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정규상	사외(비상임)	위원	2016.3.18	제56기 정기주총일
박재황 (퇴임)	사내(상임)	위원	2013.6.21	2016. 3. 13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상제도의 적정성 평가 및 연차보상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총 보상 중 상당 부분은 변동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을 이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원칙에 따라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급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성과급 산정을 위해 2016년 2월 4일 제1차 이사회에서 성과급 재원 산정 및 지급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음)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3일 개최된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2016년 4월 27일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근거로 하여 임원 성과급 이연제도 변경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2월 3일 이사회에서 성과급 관련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2016년 성과급(2017년 3월 지급분)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성과급 배분안을 토대로 보상위원회에서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급을 추가로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한화투자증권 보상위원회는 보수관련 안건(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 지급,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을 심의 시 법규 전반 및 내규 등을 검토하고 상충하는 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3일 제1차 이사회에는 2016년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이연 성과급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보상위원회 위원 1인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독립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회사 내 모든 사업부에 적용
- ② 해외: 해외영업점(자회사, 지점)에 적용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한화투자증권은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5조 의거하여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급 산정내역/이연제도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6년 성과급 지급 시, 이연제도를 적용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12.31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26명	全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8명	IB, Trading, Wholesale본부직원 中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자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보수(보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상기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상기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6년 2월 4일, 2015년 연간성과급 재원 산정내역과 조 임원의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임원의 성과급 이연제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며, 2017년 2월 3일에는 2016년 전사 손실과 관련한 임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계연도(2016년) 연간 성과급 지급을 위해 2017년 초 두 차례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17년도 제1차 보상위원회: 2017년 2월 3일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17. 1. 3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종석	정규상	송규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이연성과급 지급여부 심의 및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도 제2차 보상위원회: 2017년 2월 24일 (14:30 개최)

[안전통지일: 2017. 2. 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종석	정규상	송규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6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성과급 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연성과급 지급여부 심의 및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보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보상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항목에는 보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보수 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 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순영업수익, 비용, 손익), 생산성 지표(CIR, 인당생산성), 리스크관련 지표(RAROC, EVA)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부별 성과 개선도 등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세전이익 및 본부별 손익 등)를 참고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직원의 경우 인당생산성 및 인사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전사 성과 및 본부 성과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전사/본부 보상 재원을 산정합니다. 본부 재원이 산정되면 상기의 성과측정 방식 및 사업부·팀별 재무/비재무 지표를 검토하여 사업부·팀의 성과급을 배분하고, 이후 개인 인사평가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팀 성과급을 개인 단위로 배분합니다. 개인 단위 배분 시 합리적인 평가 반영을 위하여 소속 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임원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급 중 일정비율은 당해년도에 즉시 지급하고(대표이사 40%, 임원 6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0%), 나머지 부분은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급 중 이연분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하고, 임원의 이연분은 주식으로 이연하여 주식 또는 주식연계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가연계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경영성과가 반영된 지급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연된 보수액 지급시에는 당사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에 의거,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지급 기준, 시기, 방식 등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규정위반, 징계,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사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여부, 정도,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된 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 미확정의 결정 기준

이연된 보수액은 매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나’ 항의 조정 및 환수정책에 따른 대상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지급 여부,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해당 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지급을 확정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은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식보상(또는 주식연계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이연지급분을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주식 또는 주식연계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급은 이연지급하고, 이외 직원의 성과급은 즉시 지급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40%,20%,20%,20%)와 이외 임원(60%,13%,13%,14%)을 구분하여 이연비율을 결정하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구분 없이 동일한 이연 비율(50%,16.6%,16.7%,16.7%)로 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한화투자증권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개인성과급을 폐지하고 조직 성과급 제도로 개편한 이후 성과와 연봉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개별연봉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식 함양 및 성과 공유라는 취지 하에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한화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연봉산정 시 수행 중인 직무가치, 역할,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수당을 월급여 항목으로 통합 및 단순화 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보상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자문을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2016년의 경우 별도 자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개인적 위험회피전략을 피하여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확인서 징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6년 4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임원의 성과급 이연제도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5년)	742	-105	3.1	1,072	0.7
당해년도 (2016년)	711	-1,923	-	1,056	0.7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 (2015년)	보수총액	54	146	216	124	97	104
	성과보수액	7.7	19.9	13.3	6.8	3.7	2.8
당해년도 (2016년)	보수총액	54	173	182	129	84	88
	성과보수액	9.9	20.5	10.8	10.7	7.8	2.4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¹⁾	기본급 ²⁾	성과보수액 ²⁾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15년)	임원	25	43.8	7.2	13(3.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8	46.0	28.4	58(14.2)
당해년도 (2016년)	임원	26	44.4	9.9	7(4.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8	44.3	34.7	58(17.3)

1) 해당년도중 6개월 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 인원(명), 금액(억원) 순으로 기재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¹⁾	주식연계상품 ²⁾	기타 ³⁾
전년도 (2015년)	임원	7.2	3.8	3.4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28.4	28.4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9.9	5.9	4.0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34.7	34.7	—	—	—

1) '15년 기준주가 산정: 3,495원(2016년 1월 4일~2월 2일 평균주가)

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3) 주1), 주2) 최종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4)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임원	20.4	6.0	14.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2.7	13.7	39.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13.1	4.2	8.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47.0	13.2	33.8

- 1) 이연보상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 3) 2016년 발생 변동보상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2016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 원, 주]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임원	20.4	0.3	535,741 ¹⁾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2.7	44.3	230,433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13.1	1.9	535,987 ²⁾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47.0	45.1	89,643 ³⁾	—	—

- 1) 2013년 2~3년차 이연분 95,721주(기준주가 3,657원) / 2014년 1~3년차 이연분 342,983주(기준주가 3,831주) / 2015년 1~3년차 이연분 97,037주(기준주가 3,495주)
- 2) 2013년 3년차 이연분 68,798주(기준주가 3,657원) / 2014년 2~3년차 이연분 176,248주(기준주가 3,831원) / 2015년 1~3년차 이연분 101,127원(기준주가 3,495원) / 2016년 1~3년차 이연분 189,823주(기준주가 16년 12월말 주가 2,085원 가적용)
- 3) 2013년 3년차 이연분 89,643주(기준주가 3,657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 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임원	20.4	3.4	13.9	3.1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2.7	14.2	29.7	8.8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13.1	4.0	3.2	4.5	1.4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47.0	17.3	13.4	14.4	1.9	-

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 원]

구분		이연보수액			
		이연보수 축소액 ¹⁾	직접적 조정 ²⁾	간접적 조정 ³⁾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금액 ⁴⁾
전년도 (2015년)	임원	+0.8	-0.2	+1.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0.3	-1.7	+0.6	
당해년도 (2016년)	임원	-7.2	-1.6	-5.6	8.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6.0	-6.0	-	33.8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 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8	4.3 [*]	1.5
	특정직원	—	—	—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특별위로금 지급액 합

[별첨 1]

定 款

第 1 章 總 則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약칭 H.I.S.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7. 전기 각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겸영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부수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stock.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第 2 章 株 式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 삼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이상 12%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삼천만주로 한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삭제)

제9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각 그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를 포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관계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 사망하거나 정년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 3 章 社 債

제13조의 2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하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 4 章 株 主 總 會

제17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 5 章 理 事, 委員會, 理事會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경영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第 6 章 監査委員會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2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 이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주주총회 선임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5조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을 둘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한다.

第 7 章 計 算

제4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삭 제)

제51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도 상법 또는 기타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196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6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6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5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 2,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는 199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본 정관은 1997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2.(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 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제4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7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규정의 효력 발생 전에는 2011년 6월 3

일부터 시행된 구 정관의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정관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3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구 정관 제4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2016.10.10 본 조 전면 개정)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함)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7조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제2호의 아)목, 자)목
 2.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2016.10.10 본 호 개정)
- 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09.03 본 항 개정)

제8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다) 정관의 변경
 - 라) 자본의 감소
 - 마)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차)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타) 이사의 보수한도
- 파)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등

2. 이사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
- 라)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결의 불가)
- 마) 이사의 경업, 겸직에 대한 승인
- 바) 회사비용으로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사) 이사회 규정의 개폐
- 아)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등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자) 이사, 주요주주,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다)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마) 자기주식의 소각
- 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차입 등 채무부담
(단, 만기 7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 및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은 제외)

4.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 지분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투자
- 나)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출자(기투자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 다)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건축
- 라) 자기자본 5%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진출

5. 기타

-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2016.10.10 본 목 개정)
-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의 선임 및 해임
(2016.10.10 본 목 신설)
- 다)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 또는 이사와 관련한 소송의 제기
-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마) 위원회가 그 결의를 통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바) 기타 법령 또는 정관 및 사규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시행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8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008.4.22 본 조 신설)

제9조 (의안설명)

회의에 부의된 의안 설명은 의안 제출 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안 제출 부서 부서장의 유고 시에는 해당 부서의 실무자 또는 기타 의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 ① (2008.4.22 삭제)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제13조 (부의절차)

- 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의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제14조 (의사록) (2012.09.03 본 조 개정)

이사회 회의내용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2012.09.03 본 조 신설)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의무) (2012.09.03 본 조 신설)

-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5조에 따라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제8조의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을 적용한다.

보수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회 위원 중 1 인을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매년 1 회 이상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일, 장소, 목적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3 일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심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여부·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② 제 1 항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의견청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상제도의 적정성 평가 및 연차보상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제 10 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2월 17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기존의 위원회 명칭(보상위원회)을 적용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역할)

- ① 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임원후보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

별로 검증한다.

③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제 11 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 규정)

본 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 (24-03-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를 사전에 심사 및 승인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사유 해당여부, 비계열 회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

- ①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경영관리담당부서, 법무담당부서, 준법감시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내부거래를 하여야 한다.
 1. 내부거래의 필요성(타 사업자와 거래시 달성할 수 없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2. 거래상대방의 역할(통행세 거래 해당 여부)
 3.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적정성(시장가격 준수 및 제3자와의 거래에 준하는 가격협상)
- ② 제1항의 내부거래가 제12조에서 정한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를 작성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1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50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
2. 계열사와의 단일거래 대상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단독계약 제외)에 의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등 거래(단, 전산 관련 재계약 체결시는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2016.10.10 본 호 개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 (보고)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의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제1항의 간사는 경영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폐)

위원회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 4 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성

제 8 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 16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 ⑤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담당임원이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03.21>
- ⑥ 제 5 항에 따라 감사담당임원이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03.21>

제 3 장 회의

제 11 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 3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회의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협의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준법감시인 관련 사항)

- ① 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감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3. 기타 증권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제 18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해 위임 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연간 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9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 이라 한다)을 둔다.
- ③ 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④ 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 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 년 0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규정의 폐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감사 직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4.03.21>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 년 0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담당임원의 업무 범위 (제 10 조 제 6 항 관련)

업무 구분	수행 업무 내용	비고
감 사	<감사위원회 관련> - 감사위원의 위원회 소집 불가 시 위원회 직무 대행 - 위원회 위임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회 정기 보고 <감사 실시 관련> - 차기 회계연도 감사계획 작성 - 감사 실시 등 내부 감사부서 업무 총괄 및 감사 주관 - 일상/종합/특별/사고 감사에 관한 사항 주관 - 감사 실시 승인 및 일정 변경 승인 -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중대사항 및 결과 보고 받음 - 계약직 감사전문인력 채용 및 외부충원 승인 - 필요 시 감사직무관련 세부 지침, 시행세칙 등 제정 <감사 조치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및 대표이사 보고 - 감사결과 인사위원회 처분 요구 및 재심 청구 - 임원에 대한 금융범죄 고발 주체 - 『징계양정지침』 [별표] 개정 전결 <일상 감사 관련> - 대표이사 결재사항 공람 - 일상감사 실시 및 결과 보완·시정 요구 <기타> - 기타 위원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부서장에게 리스크 관리 위원회 관련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음	
준법 관리	- 준법감시인에게 상시감시, 검사결과, 모니터링 업무 및 내부제보 관련 등 중요사항 보고 받음 -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업무위탁계약 검토 - IT 운영담당부서장에게 전산장애 내역 보고 받음	
재무	- 이사회에 회계처리방침 변경 타당성에 관한 의견 제시 -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작성 또는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즉시 보고 받음	

위험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험 선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관리 기본원칙)

- ①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위험관리목표와 정책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한다.
- ②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는 모든 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활동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3.02.20 본 항 개정)
- ④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대상의 명칭, 거래의 형태 등에 불문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한다.
- ②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사규, 이사회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삭제(2016.10.10 본 항 삭제)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 라 함은 특정한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말한다.
2. “포지션” 이라 함은 업무활동의 결과로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3.02.20 본 호 개정)
3. “위험금액” 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방법(표준방법)에 따라 위험을 계량화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재무건전성비율” 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자산부채비율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5. “위험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위험관리 조직, 관련 규정 및 지침, 위험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등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말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6. “신상품”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거래되는 시장, 위험속성, 손익구조 등이 기존의 상품과 달라 별도의 위험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품 (2016.10.10 본 목 신설)
 - 나. 거래처리, 거래확인, 결제, 대사 등을 위하여 기존의 업무절차와는 별도의 업무절차를 필요로 하는 상품
 - 다. 기존의 전산시스템으로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이 불가능한 상품
 - 라. 기존의 모델을 통하여는 가치평가 및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상품
 - 마. 기타 법무, 세무, 규정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상품
7. “신규사업” 이라 함은 회사가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업무영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02.20 본 호 추가)
 - 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 나. 기존의 규정을 통하여 위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
8. “현업부서(장)” 이라 함은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등 각종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지원부서(장)” 이라 함은 현업부서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결제,

회계처리 등 지원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통제부서(장)”이라 함은 위험관리,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위험관리담당부서”라 함은 위험의 인식, 측정, 분석, 통제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외 업무를 소관하는 하부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하부 조직은 제외한다. (2015.03.04 본 호 개정)
12. “VaR”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일정 신뢰수준으로 일정 보유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금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을 말한다.
13. “신뢰수준”이라 함은 모수가 추정값 이내에 포함될 확률을 말한다.
14. “민감도”라 함은 위험요인이 한 단위 변화할 때, 포트폴리오 또는 각 상품의 가치변화 값을 말한다.
15. “신용익스포저”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금액을 말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16. “고위험영역”이라 함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객자산의 연계 등으로 포지션 청산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 부채, 부외항목, 포트폴리오 등을 말한다 (2016.10.10 본 호 신설)

제2장 위험의 구분

제5조(관리대상 위험)

① 회사가 관리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위험 :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2. 신용위험 : 증권발행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부도,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호 개정)
3. 유동성위험
 - 가. 시장유동성위험 : 포지션 청산 시 해당자산의 거래량 부족 혹은 호가 실종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목 개정)
 - 나. 자금조달유동성위험 : 자금 운용기간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의 유출에 따른 지급불능상태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조달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목 개정)

4. 운영위험 : 부적절한 업무절차,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절차상의 오류, 임·직원의 부정 등으로 인한 위험
 5. 법률위험 : 법해석상 또는 계약서의 오류, 위법행위, 과세 및 기타 규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
 6. 평판위험 : 회사에 대한 외부의 여론이나 이미지가 악화됨으로 인한 위험
 7. 시스템위험 :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위험
- ② 제1항의 위험은 계량화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량화가능 위험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2. 계량화불가능 위험 : 법률위험, 평판위험, 시스템위험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계량화에 투여되는 비용 대비 계량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 계량화가능 위험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장 위험관리조직

제1절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제6조(이사회의 역할 및 심의·의결사항)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이사회는 위험관리조직의 최상위 기구로서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규정 제·개정 및 폐지 (2016.10.10 본 호 신설)
 3. 기타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사항 (2013.02.20 본 호 추가)
- ④ 이사회는 위원회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받고,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험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2013.02.20 본 호 개정)
2.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3. 전사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2016.10.10 본 호 신설)
4.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3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전체 이사가 위원이 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15.03.04 본 항 개정)
-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은 필요 시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⑥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1.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책임자는 의결사항을 상근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2016.10.10 본 호 신설)
2.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2016.10.10 본 호 개정)
3. (2016.10.10 본 호 삭제)
4. 위험관리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2016.10.10 본 호 신설)
5. 위험관리규정과 관련 지침 및 세칙의 위반시 조치
6.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2016.10.10 본 호 신설)
7. 재무건전성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시 대응전략 수립
8.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2016.10.10 본 호 개정)
9.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10 본 호 신설)
10.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10 본 호 신설)
11. 위기상황 대처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12. 총비용 10억이상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2016.10.10 본 호 신설)
13.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2016.10.10 본 호 개정)
14.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15. 삭제 (2015.03.04 본 호 삭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위험관리책임자와 그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장 승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④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

-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현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2013.06.21 본 호 개정)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업부서장과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위원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장과 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단, 신속한 의사결정, 자료유출의 제한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정만을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집행위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 ③ 집행위의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집행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선임한다
- ④ 집행위는 집행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제12조(집행위의 운영)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집행위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집행위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집행위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집행위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집행위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집행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책임자는 집행위 의결 결과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집행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 ⑥ 집행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집행위 심의·의결사항)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집행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책임자가 상정한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 2. 위험관리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016.10.10 본 호 개정)
 - 3. (2016.10.10 본 호 삭제)
 - 4. 위험측정 또는 가치평가 방법 승인 및 적정성 점검 (2016.10.10 본 호 신설)
 - 5. (2016.10.10 본 호 삭제)
 - 6. (2016.10.10 본 호 삭제)
 - 7. (2016.10.10 본 호 삭제)
 - 8. 총비용 10억원 미만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2016.10.10 본 호 개정)
 - 9.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2016.10.10 본 호 개정)
 - 10. 기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지침의 제·개정 내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③ (2016.10.10 본 항 삭제)
-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집행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집행위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 ⑤ 집행위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집행위 안건 상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투심위의 위원(이하 “투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집행위 의결에 의한다.
- ③ 투심위의 위원장(이하 “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단,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심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위에서 투심위원장을 선임하고, 투심위원장 부재 시 투심위원장은 집행위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투심위는 투심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며, 이의 정함은 투심위원장이 하도록 한다.

제15조(투심위의 운영)

- ① 투심위는 제16조에 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심위원장 발의로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2016.10.10 본 호 개정)
- ② 투심위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투심위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투심위원장이 결정 투표를 한다.
- ④ 출장 등의 사유로 투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투심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유선이나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투심위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⑤ 투심위에 안건을 상정한 임직원이 투심위원인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간사는 투심위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투심위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 ⑦ 투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1. 투심위원장은 투심위 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투심위 승인 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집행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집행위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호 개정)
 - 2. 제1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 ⑧ 투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투심위 심의·의결사항)

- ① 투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책임자가 상정한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2.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의 인수
3. 일정 규모 이상인 매입보장이나 지급보증
4. 일정 규모 이상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5.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6. (2016.10.10 본 호 삭제)
7. 기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투심위원장이 투심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체적인 투심위 심의·의결사항은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또는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에서 정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투심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투심위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

1. 서면 의결
2. 대표이사 승인

- ④ 제3항의 경우 현업부서장은 위험관리책임자와 그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는 차기 투심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투심위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타 투심위 안건 상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절 위험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2016.10.10 본 절 개정)

제17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7영업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등
 -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정 및 절차 등
- ⑥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겸직금지)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2.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임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설치)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회사는 위험의 인식, 측정, 분석, 통제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위험관리담당부서를 설치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회사의 타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전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 직원은 현업부서 또는 지원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타부서와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1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구성)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1. 위험관리업무의 개념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직원
 2. 위험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직원
 3. 2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직원 (2011.09.29. 본 호 개정)
- ②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인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2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업무) (2013.06.21 본 조 개정)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1. 이사회, 위원회, 집행위 또는 투심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 (2016.10.10 본 호 개정)
2. 이사회, 위원회가 수립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집행, 관찰 및 보고 (2016.10.10 본 호 개정)
3. 위원회, 집행위 또는 투심위 의사록 작성 및 보관
4. 재무건전성비율의 산정, 주요 변동 원인 분석 및 보고
5. 각종 위험한도의 관찰 및 보고
6. 위험관리 현황의 평가 및 보고
7.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지원부서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승인
9. 위험을 감안한 성과평가 및 보고
10. 고위험영역의 통제 (2016.10.10 본 호 개정)
11.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통제
12. 과도한 신용집중의 통제
13. 과도한 부외거래의 통제
14. 위험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과 세칙 위반시의 보고 및 제재 건의
15.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와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3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권한)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집행위에 건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3절 현업부서 및 지원부서

제24조(현업부서의 역할)

- ① 현업부서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② 현업부서는 거래 체결 후, 전산시스템 입력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지원부서에 당해 거래내역 및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현업부서는 부서와 관련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현업부서는 위험한도 변경 및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5조(일선위험관리자의 지정)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영업부문 본부장은 관할부서에 대한 위험관리를 책임지며,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선위험관리자를 지정하고 위험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일선위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일선위험관리자는 영업부문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험한도 배분안 마련 (2016.10.10 본 호 신설)
 2. 포지션 및 위험금액 조정, 산정 및 보고 (2016.10.10 본 호 개정)
 3. 세부적인 운용 및 관련 위험현황과 한도관리 모니터링 (2016.10.10 본 호 신설)
 4. 자금(유동성) 관리 (2016.10.10 본 호 신설)
 5. 경영성과 보고에 필요한 위험현황 제공 (2016.10.10 본 호 신설)
 6.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위험 분석 (2016.10.10 본 호 신설)
 7. 위기상황시 대응조치 마련 (2016.10.10 본 호 신설)

8. 위험관리부서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위험관리 담당부서와 현업부서간 조정기능 수행) (2016.10.10 본 호 신설)
9. 위험관리규정, 시행세칙 및 지침의 개선 및 보완 건의 등 (2016.10.10 본 호 신설)
10.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요청한 자료 작성 및 제출
11.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

③ 일선위험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26조(지원부서의 역할)

- ①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의 거래 발생시 회계처리, 결제처리, 거래대사, 보고서작성 등 거래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의 거래 진위를 확인 후 결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래내역 및 결제업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현업부서 및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결제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는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기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④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실행한 거래가 관계법규 등에 따라 불법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거래 관련 분쟁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 포지션을 평가함으로써,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관리 업무

제27조(재무건전성비율의 관리)

- ①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비율을 관리비율이라 하며, 회사는 관리비율을 금융투자업규정 상 경영개선권고수준 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관리비율로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위험 검토)

- ① 회사는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취급 상품의 상품성 및 영업전략과의 부합 여부
 - 2. 가치평가 및 위험 측정 방법
 -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이익 대비 위험의 적정성
 - 4.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 5. 업무절차 및 거래기록 방법
 - 6. 대고객 영업시 유의사항
 - 7. 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 방안
- ②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협조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 또는 투심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시장위험관리)

- ① 시장위험관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인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포지션과 위험금액 또는 VaR를 부서별 또는 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위험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 측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사후검증(Back-Test)을 수행하여야 하고, 극단적인 시장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잠재적 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금액 또는 VaR, 민감도 등 시장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신용위험관리)

- ① 신용위험관리는 거래상대방 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부도, 계약불이행 등의 신용사건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포지션과 위험금액을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익스포저, 신용VaR 등 신용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현업부서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여야 하고, 담보, 보증, 증거금 협정 등의 신용보강 조치와 상계 등을 통하여 신용위험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31조(유동성위험관리)

- ① 유동성위험관리는 유동성 변동요인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기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유동성 위기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액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위험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동성비율, 초단기 무담보 차입 비율 등 유동성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자금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이하 “자금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단기 현금 소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및 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자금담당부서는 유동성위험 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자금담당부서는 허용한도 초과시 또는 필요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2조(운영위험관리)

- ① 운영위험관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현업부서, 통제부서 및 지원부서 간의 업무분장,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각 부서의 업무절차는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 ③ 현업부서는 거래기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단, 자동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가 즉시 기록되고 회사 거래시스템에 신속히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모든 거래를 그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현업부서의 거래로 인한 현금과 증권의 이동은 지원부서의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포지션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변수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⑦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지원부서 및 다른 통제부서와의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통하여 운영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⑧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운영위험으로 인한 손실자료를 일관되게 수집, 저장,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3조(법률위험관리)

- ① 법률위험관리는 법규 및 계약의 위반, 법규 및 계약의 잘못된 해석,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법률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이하 “법무부서”라 한다)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요건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등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현업부서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체결 전 적절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④ 법무부서는 법적 문서중 회사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 발견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법무부서와의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통하여 법률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4조(평판위험관리)

- ① 평판위험관리는 외부의 여론이나 이미지 악화로 인한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주주 및 고객, 언론 등과의 비우호적 관계형성 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홍보담당부서는 주주, 고객, 신용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시로 확인하고,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공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IR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민원처리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평판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5조(시스템위험관리)

- ① 시스템위험관리는 대규모 신용사건 발생, 국가위기상황 발생, 거래 또는 결제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국내외 대기업 및 거대 금융회사의 부도 혹은 신용등급하락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규모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제36조(한도관리)

- ① 한도관리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재무상황,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위험 요인별 또는 업무별로 각종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전체 한도관리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각종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고위험영역에 대해 필요시 별도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한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⑥ 현업부서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위험한도를 확인하고 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성과평가 및 보상)

- ① 회사는 각 부서, 개인의 실적을 손익의 규모 또는 손익률만으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동 실적이 발생한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위험의 규모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적을 조정함으로써 손익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보상, 한도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③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성과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고, 기간별 성과결과의 변동이 큰 거래업무에 대한 별도의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관리 보고)

- ① 위험관리 보고는 거래 또는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라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험관리 보고는 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험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시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현업부서와 위험관리담당부서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위험관리 보고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 조회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위기상황 대처)

- ① 위원회는 위기상황 발생시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고객 신뢰 유지 및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상황 대처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위기상황 대처계획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위기상황 인식 및 단계별 기준, 위기발생시 보고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전사의 위험경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종합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5장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제40조(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 측정 및 분석, 보고, 한도관리 등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은 위험요인별로 통합하여 구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상의 목적으로 위험요인별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은 향후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전체 위험관리 관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류 등을 일관성 있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내부관리 및 검사

제41조(내부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위험관리업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현황, 규정의 준수여부, 위험의 측정방법의 개발 및 지속적 보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 위반시 조치)

- ① 이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위반내용, 위반사유, 사후 대처 내용 등을 명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위원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익의 축소 조정 (2016.10.10 본 호 신설)
 2. 위험한도의 축소 조정
 3. 신규 포지션 개설 금지
 4. 기존 포지션의 해지
 5. 거래담당자의 거래자격 정지

제43조(지침 등 제정)

위원회 또는 집행위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2016.10.10 본 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부터 "위험관리규정" 및 "위험관리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의 위험관리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이사회운영 규정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에서 설치한 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해당 위험관리지침 개정시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조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관리위원회” 로의 명칭변경과

제7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는 차기
주주총회 이후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일선 위험관리자” 의 지정과 역할수행은 2017년 7월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

경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및 기능)

- ① 경영위원회는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의 전결사항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한다.

제3조(선임 및 구성)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2016.10.10 본 조 제목 개정)

- ①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제5조(소집)

- ①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경영위원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3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을 경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6.10.10 본 조 개정)

제7조(결의)

- ① 경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경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위원은 전항의 위원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경영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① 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한다.

제9조(부의 절차 등)

- 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의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5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의사항)

경영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 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진출
2. 인허가 업무
3. 복지기금의 출연
4. 우리스주조합에 대한 대출
5. 자기자본 5% 이하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6. 지점, 사무소 및 해외사업소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
7. 자기자본 5% 미만의 출자(기투자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단, 계열회

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은 이사회 결의)

8.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1조(통지)

경영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6.10.10 본 조 개정)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제정 및 변경 등)

- ①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이 규범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와 구성현황

제5조 (이사회와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이사는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구체적인 결의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내 위원회의 시행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제12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 사항에 대한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7조 (이사회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권 행사방법)

① 이사회 의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제1항의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20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위원회”라 함은 각 조 제목의 위원회를 말한다)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④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3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회계·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5.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보수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기타 보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6조 (임원의 범위)

- 1. 이사
- 2. 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 3. 지배구조법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 4.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 5.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제27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

각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8조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 (업무집행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3조 (임원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

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4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른다.

제35조 (임원의 퇴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이사가 그 직무를 하되, 동일 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 퇴임에 관하여는 제 16조를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 해임결의로 퇴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 해임결의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사내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 (임원에 대한 교육)

-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사내의 임원 후보자로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 및 연임의 결정 시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8조 (임원 성과평가)

- ①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임원의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비정량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9조 (임원 보수지급)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의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40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한다.

제41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예정 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받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1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

단 시일내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43조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과 제42조를 적용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회사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지원부서는 이사회에 제2항의 업무추진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4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이사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7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소관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탐색, 발굴하고 관리업무를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제48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9조 (최고경영자 임기 및 역할 등)

-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 (최고경영자 퇴임 및 평가)

-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 10.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한화투자증권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우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규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질서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혁신)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8조(상호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9조(주주가치 극대화)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책임)

회사와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적이익 추구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건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불법 제공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및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